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공공매립장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관 련 자 ① 원주시 ○○○○과

지방○○○○○ ○○○

② 원주시 ○○○○소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4.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관련 업무를, ○○○○소 지방○○○○○ ○○○는 2015. 4.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원주시 공공매립장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일 100kg이상,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배출시설계와 생활계로 분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정 처리업자

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1일 100kg이상 발생 시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관리 및 신고 부적정

원주시 ○○○○과는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주)○○○○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증명서 발급 시에 가연성 폐기물을 1일 100kg이상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 후 소각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그 밖의 폐기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가연성폐기물이 원주시 공공매립장으로 매립되는 등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원주시 ○○○○○○소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건설폐기물에 해당)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은 ○○시 공공매립장으로의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임에도 반입 가능한 품목인 사업장폐기물로 판단하여 준설토에 대한 성분분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도록 배출자 신고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관리하였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실적보고 현황〉

업소명	주 소	반입량(톤)			비고
		2014	2015	2016	
(주)○○○○	○○시 ○○면 ○○리 000-0번지	0	0	44	
(합)○○○○○○○	○○시 ○○면 ○○리 000번지	0	0	26	
○○○○(주)	○○시 ○○면 ○○리 0000-0번지	0	0	91	
원주시○○○○○○○○	○○시 ○○로 000	639	694	375	1,708
계		639	694	536	1,869

2. 공공매립장 운영·관리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소각 가능한 가연성폐기물 등 매립관리 소홀

원주시 ○○○○소는 ○○시 ○○면 ○○리 산 000번지 일원 244,600㎡(매립용적 5,208,000㎥) 규모의 공공매립장을 1992. 12. 1. 승인기관인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였고

2014. 12. 29. 동 공공매립장을 확장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여 강원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원주시 공공매립장 설치승인 현황>

구분	설치승인 시 (1992.12.01)	변경승인 (2014.12.29.)	비고
처리대상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원주시는 2014.12.22. 매립장 외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설(SRF), 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주)○○○○이 책임 운영 중임

2014. 12. 29. 동 공공매립장에 반입대상 폐기물로 승인을 득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동 매립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자 동 공공매립장에 대하여 현장조사(2016. 9. 6.)를 실시한 결과,

원주시 ○○○○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매립하지 않고 반드시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하는 폐섬유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1996년 7월경부터 2016. 9. 6.까지 직영 및 민간위탁사(주, ○○○○)를 통해서 매립하고 있었다.

위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반입불가 품목 반입·처리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는 2015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원주시 ○○○ 종합처리단지 내 폐기물연료화시설(SRF, 대기 3종)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화가 불가한 가연성 협잡물¹⁷⁹⁾ 11,617톤, 2014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주)○○○○ 외 56개 업체 등 ○○시 관내 업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3,357톤 등을 동 매립장에 반입·매립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② 매립시설 관리기준(복토기준) 이행 미흡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거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시험에 의한 용출시험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우기 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를 위해 진출입로 포설용으로 사용한 순환골재에 대한 용출시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자, ○○○○)에서 2015년부터 2016. 9. 6.까지 17,700톤을 무상 반입 사용하였다.

※ 순환토사 및 순환골재는 1996년경부터 매립장에 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감사 시(2016. 9. 26.)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어 순환골재 품질기준(매립시설 복토재)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179) 2012. 5. 22. 원주시 ○○○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사항 중 “고형연료화가 불가한 기타 가연성협잡물은 매립처리

위와 같이, ○○○와 ○○○는 발급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내용의 준수여부 확인 등 사업장 관리를 소홀하였고, 건설폐기물인 준설토를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자 신고 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였으며, 직영 및 위탁운영을 통한 일상적인 매립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 및 기준 적합여부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1일 100kg 이상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공공매립장에 부적정하게 매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매립장 사용기한 단축은 물론 운영비용 증가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과 담당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공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